

產業財產權制度 대폭 改正

1.13 公布…9.1부터 施行

特許法改正法律

法律第 4207號
1990.1.13 公布

〈前號에서 계속〉

第103條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特許出願時に 그 특허出願된發明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發明을 하거나 그發明을 한者로부터 知得하여 國내에서 그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事業의準備를 하고 있는者は 그 실시 또는準備를 하고 있는發明 및事業의目的의 범위안에서 그特許出願된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第104條 (無效審判登録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録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が 特許發明 또는 登錄實用新案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것을 알지 못하고 國내에서 그發明 또는 考案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事業의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準備를 하고 있는發明 또는 考案 및事業의目的의 범위안에서 그特許權 또는 特許나 實用新案登録을 無效로 한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 同一發明에 대한 2 이상의 特許 중 그 하나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 特許發明과 登錄實用新案이 동일하여 그 實用新案登録을 無效로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 特許를 無效로 하고 그 考案과 동일한發明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特許를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 實用新案登録을 無效로 하고 그 考案과 동일한發明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特許를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 第1號 내지 第4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者. 다만, 第118條 第2項의 规定에 해당하는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者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105條 (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① 特許出願日전 또는 特許出願일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 그 特許權과 저촉되는 경우 그 意匠權의 범위안에서 당해 特許權 또는 그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의 存續發明이 만료되는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 ② 特許出願일전 또는 特許出願일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 그 特許權과 저촉되는 경우 그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存在하는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

또는 그 意匠權이나 專用實施權에 관한 意匠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18條 第1項의 效力を 가지는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原權利의 범위안에서 당해 特許權 또는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③ 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106條 (特許權의 收用등) ① 政府는 特許發明이 國防上 필요한 때에는 特許權을 收用하거나 特許發明을 實시하거나 政府 외의 者로 하여금 實시하게 할 수 있다.

② 特許權이 收用되는 때에는 그 特許發明에 관한 特許權의 權利는 消滅된다.

③ 政府 또는 政府 외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虛權을 收用하거나 特許發明을 實시하는 경우에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 대하여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④ 特許權의 收用·實시 및 補償金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7號 (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① 特許發明을 實시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發明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特許發明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特許發明의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의 許諾에 관하여 協議를請求할 수 있다.

1. 特許發明이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年 이상 國內에서 實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特許發明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年 이상 國내에서 상당한 營業的 規模로 實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特許發明의 實시가 公益上 특히 필요

한 경우

②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은 特許發明이 特許出願日부터 4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特許發明을 實시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特許廳長에게 通常實施權 設定에 관한 裁定(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請求할 수 있다.

第108條 (答辯書의 제출) 特許廳長은 裁定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請求書의 副本을 그 請求에 관련된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기타 그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109條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의 義見廳取) 特許廳長은 裁定하고자 할 때에는 第117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110條 (裁定의 方式) ① 裁定은 書面으로 하고 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裁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通常實施權의 범위

2. 對價와 그 支給方法 및 支給時期

第111條 (裁定書謄本의 송달) ① 特許廳長은 裁定을 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裁定書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에게 裁定書謄本이 송달된 때에는 裁定書에 명시된 바에 따라 當事者 사이에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112條 (對價의 供託) 第110條 第2項 第2號의 對價를 支給하여야 할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1. 對價를 받을 者가 受領을 거부하거나

受領할 수 없는 경우

2. 對價에 대하여 第190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
다만, 質權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113條 (裁定의 實效) 裁定을 받은 者가 第110條 第 2 項 第 2 號의 支給時期까지 對價(對價를 定期 또는 分割하여 支給할 경우에는 최초의 支給分)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裁定은 效力を 잃는다.

第114條 (裁定의 取消) ① 特許廳長은 裁定을 받은 者가 그 特許發明을 實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裁定을 取消할 수 있다.

- ② 第108條 · 第109條 · 第110條 第 1 項 및 第111條 第 1 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第115條 (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裁定에 대하여 行政審判法 第 3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裁定으로 정한 對價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第116條 (特許權의 取消) ① 特許廳長은 第 107條 第 1 項 第 1 號의 사유로 인한 裁定이 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年 이상 그 特許發明이 國內에서 實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特許權을 取消할 수 있다.

- ② 第108條 · 第109條 · 第110條 第 1 項 및 第111條 第 1 項의 規定은 第 1 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特許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第117條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의 設置) ① 特許權의 收用, 裁定 및 그 取消등에 관하여 特許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에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를 둔다.

②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의 구성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8條 (通常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① 通常實施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취득할 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② 第39條 第 1 項 · 第103條 내지 第105條 · 第107條 · 第122條 · 第182條 및 第183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登錄이 없더라도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效力이 발생한다.

③ 通常實施權의 移轉 · 變更 ·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 · 移轉 · 變更 ·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 3 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第119條 (特許權등의 포기의 제한) ① 特許權者는 專用實施權者 · 質權者 또는 第39條 第 1 項 · 第100條 第 4 項 또는 第102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特許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② 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100條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 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第120條 (포기의 效果) 特許權 · 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特許權 · 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第121條 (質權) 特許權 ·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때에는 質權者는 契約으로 特別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特許發明 을 실시할 수 없다.

第122條 (質權 競落에 의한 通常實施權) 特許權者는 特許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 이전에 그 特許發明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特許權者는 質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123條 (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特許發明의 實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第124條 (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特許權의 消滅) 特許權은 相續이 開始된 때 相續人이 없는 경우에는 消滅된다.

第125條 (特許實施報告) 特許廳長은 特許權者 · 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게 特許發明의 實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 6 章 特許權者の 보호

第126條 (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等)

①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生產하는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第127條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特許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生產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業으로 生產 · 讓渡 · 貸與 · 輸入 또는 展示하는 행위

2. 特許가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

법의 實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業으로서 生產 · 訂渡 · 貸與 · 輸入 또는 展示하는 행위

第128條 (損害額의 推定 등) ①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額을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額으로 推定한다.

②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으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特許發明의 시итет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額을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虛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額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129條 (生產方法의 推定) 물건을 生產하는 方法의 發明에 관하여 特許가 된 경우에 그 물건이 特許出願전에 國內에서 公知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特許된 方法에 의하여 生產된 것으로 推定한다.

第130條 (過失의 推定) 他人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第131條 (特許權者等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特許權者 또

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같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32條 (書類의 제출) 法院은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當事者の 申請에 의하여 他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計算을 하는 데에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書類의 所持者가 그 書類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7章 審判 및 抗告審判

第133條 (特許의 無效審判) ① 利害關係人 또는 審查官은 特許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 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1. 第25條 · 製29條 · 第31條 내지 第3項

- 第42條 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44條의 각 規定에 위반된 경우
 - 2. 無權利者에 대하여 特許된 경우
 -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 4. 特許된 후 그 特許權者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特許가 條約에 위반된 경우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特許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 ③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特許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特許權은 그 特許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特許權의 專用實施權者 기타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속>

案

月刊「發明特許」原稿募集

内

本誌는 讀者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產業財產權 專門誌입니다. 製作에 讀者 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產業財產權에 관한 内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 바랍니다.

- ◎論文 : 200字 原稿紙 20~50枚 (번역문 포함)
- ◎우리社의 特許管理 : 15~30枚 내외
- ◎發明成功事例(職務發明 우대) : 20枚 내외 (추후 단행본으로 製作 됨)
- ◎나의 提言 : 10枚 내외 (產業財產權法 改善사항에 한함)
- ◎產業財產 수필 : 10枚 내외 (外國視察記 포함)
- ◎기타(社內消息 · 新製品 紹介)
- ◎接受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部 「月刊 發明特許」編輯室
- ◎接受期限 : 수시접수